

#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(김인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  
발 의 자 : 김인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재형, 김제리, 김종무,  
김태수, 김평남, 김호평,  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 
송아량, 송정빈, 양민규,  
이성배, 이영실, 임종국,  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 
최정순, 한기영, 황규복  
의원(24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체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 등) 및 인력기준 등에 미달하면서 건설시장에서 낙찰만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(폐이퍼컴퍼니)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부적격업체”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나.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9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부적격업체”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 (부적격업체 단속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
2.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
3.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,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

접시공의무 위반,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·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,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.

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제30조의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역건설산업”이란 서울특별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지역 내에서의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호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부적격업체”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 (부적격업체 단속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(기술능력, 자본금, 시설·장비·사무실, 보증가능금액)</p> <p>2.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</p>

3.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,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,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·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,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.

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

제9조 · 제10조 (생략)

제30조의2, 제3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

제10조 · 제11조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